

『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』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8. 8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대상업체 : 붙임 참조
2. 공고기간 : 2024. 8. 8. ~ 2024. 9. 9.
3. 청 문 일 : 2024. 9. 9.(월) 14:00 서구청 도로과 4층
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5. 기타사항

가.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(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)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·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나. 귀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(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)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진술서(청문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미 제출 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의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☎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공시송달 대상 업체

업체명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근거	처분내용 (청문)
(주)알티이엔씨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송파-15-09-02)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1번길 76 201호 (석남동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등록말소 - 청문일시 : 2024. 9. 9.(월) 14시 - 청문장소 : 인천 서구청 도로과
(주)피피테크	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(계양2020-10-03)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70 706-1호 (원당동, 새샘프라자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
선인건설주식회사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경북문경 2002-10-01)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(문경 2007-13-01)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76 802-6호 (당하동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
세광종합개발(주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인천 계양 2006-10-3)	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22번길 30, 301호 (가좌동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
이앤에스건설주식회사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인천부평구2015-09-01)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(인천부평구2021-06-01)	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109 207호 (가좌동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8의2	